

[별 표]

1. 가스공급시설의 정기검사 수수료 및 안전관리수준평가 수수료

대		상	금	액						
제	조	소	가스도매사업자 시설 (합성천연가스 제조시설)	103만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시설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제조시설)	54만5천원						
공		급	소	24만5천원						
정		압(밸브)	기	지	19만7천원					
정		압	기		8만8천원					
배	관	연장이 2km미만		5만6천원						
		연장이 2km이상 5km미만		11만5천원						
		연장이 5km이상 10km미만		20만3천원						
		연장이 10km이상		20만3천원에 10km를 초과한 매 1km마다 1만9천원을 가산 한 금액						
안	전	관	리	수	준	평	가	시 설	배관길이 1km당 40,000원으로 하며, 1km미만인 경우는 1km로 계산한다.	
								시스템	배관 총연장이 300km 미만	437만8천원
									배관 총연장이 300km 이상 500km 미만	656만8천원
									배관 총연장이 1000km 미만	874만7천원
									배관 총연장이 1,000km 이상 2,000km 미만	1,094만6천원
									배관 총연장이 2,000km 이상	1,313만5천원
									배관 총연장이 3,000km 이상	1,532만5천원

2.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수수료

대 상		금 액	
		완 성 검 사	정 기 검 사
자 동 차 용 압 축 천 연 가 스 완 속 충 전 설 비		3만2천원	2만8천원
그 밖 의 시 설	월사용예정량이 1천㎥이하	6만6천700원	3만2천원
	월사용예정량이 1천㎥초과 월사용예정량이 4천㎥이하	6만6천700원	4만8천500원
	월사용예정량이 4천㎥초과	6만6천700원에 4천㎥ 를 초과한 500㎥마다 9천300원을 가산한 금 액. 다만, 104만7천원 을 초과할 수 없다.	4만8천500원에 4천㎥ 를 초과한 500㎥마다 9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38만8천원을 초 과할 수 없다.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는 정기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단,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10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은 정기검사 수수료를 제외한다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변경공사에 따른 완성검사 후 같은 해에 정기검사를 받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수수료에는 변경부분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한다. 3.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연소기가 설치된 실이 2개소이하인 경우의 정기검사수수료는 최고금액 38만8천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정가스사용시설에 금속 이중관형 연돌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완성검사 수수료 외에 104,000원을 가산한다. 			

3.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구 분	금 액	
	신 규	변 경
가 스 도 매 사 업 자 시 설 (합 성 천 연 가 스 제 조 시 설)	48만2천원	37만1천원
일 반 도 시 가 스 사 업 자 시 설 (나 프 타 부 생 가 스 , 바 이 오 가 스 제 조 시 설)	34만6천원	26만7천원
도 시 가 스 충 전 시 설	29만1천원	22만5천원

4. 도시가스충전시설 중간·완성·정기검사 수수료

저장(처리)능력		금 액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액 화 가 스 의 충 전 시 설	5톤이하	10만6천원	17만4천원	13만9천원
	5톤초과 10톤이하	14만2천원	23만5천원	16만7천원
	10톤초과 20톤이하	16만4천원	29만5천원	19만7천원
	20톤초과 50톤이하	23만원	43만5천원	28만1천원
	50톤초과 100톤이하	32만원	59만9천원	37만5천원
	100톤초과 500톤이하	54만6천원	101만원	67만6천원
	500톤초과 1천톤이하	76만8천원	144만3천원	91만3천원
	1천톤초과	76만8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43만5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144만3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6만7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413만3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91만3천원에 1천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4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214만8천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저장(처리)능력		금 액		
		중간검사	완성검사	정기검사
압축가스의충전시설	1천 m^3 이하	12만3천 원	20만4천 원	15만1천 원
	1천 m^3 초과 2천 m^3 이하	19만5천 원	35만7천 원	22만9천 원
	2천 m^3 초과 3천 m^3 이하	22만3천 원	44만8천 원	27만9천 원
	3천 m^3 초과 5천 m^3 이하	27만5천 원	52만7천 원	33만9천 원
	5천 m^3 초과 1만 m^3 이하	45만5천 원	89만2천 원	64만9천 원
	1만 m^3 초과 10만 m^3 이하	73만9천 원	146만1천 원	100만7천 원
	10만 m^3 초과 20만 m^3 이하	101만5천 원	194만7천 원	168만6천 원
	20만 m^3 초과 50만 m^3 이하	127만6천 원	248만5천 원	216만1천 원
	50만 m^3 초과 100만 m^3 이하	172만3천 원	307만4천 원	261만3천 원
	100만 m^3 초과	172만3천 원에 100만 m^3 를 초과한 10만 m^3 마다 8만7천 원 을 가산한 금액. 다만, 243만5천 원 을 초과할 수 없다.	307만4천 원에 100만 m^3 를 초과한 10만 m^3 마다 15만5천 원 을 가산한 금액. 다만, 413만3천 원 을 초과할 수 없다.	261만3천 원에 100만 m^3 를 초과한 10만 m^3 마다 13만9천 원 을 가산한 금액. 다만, 275만2천 원 을 초과할 수 없다.

**5. 가스공급시설의 시공감리 및 정밀안전진단·배관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안전성평가 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호 나목에 의한 대상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법 제17조의4 제5항에 따른 배관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이행결과 확인 수수료는 259만원/km,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호 다목에 의한 대상시설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는 207만원/km(단, 매설배관피복손상탐지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337만원/km을 가산한다.)으로 하며, 1km이하인 경우에는 1km로 계산한다.

가.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 30%를 적용한다.
-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나.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1일당가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시공감리 수수료 산정금액의 산출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시공감리·정밀안전진단 및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이행결과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소정근로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로 한다.)을 적용한다.

6. 가스안전영향평가 수수료

대 상	금 액	대 상	금 액
전기철도건설공사	230만2천원	지하차도건설공사	135만7천원
지하보도건설공사	95만3천원	지하상가건설공사	165만1천원

7.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수수료

수수료는 국내 공급 또는 소비물량을 기준으로 0.041원/m³ (0 ℃, 101.3 kPa)으로 한다.

8. 교 육 비

대 상			금 액
교육과정별	교 육 대 상 자		
가. 전문교육	(1)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신규	19만5천900원
		보수	3만7천100원
	(2) 도시가스사업자의 배관안전점검원	신규	13만300원
		보수	3만7천100원
	(3)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안전조치 대행업소의 기술인력 중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	신규	19만5천900원
		보수	3만7천100원
	(4)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신규	6만1천400원
		보수	2만8천600원
	(5) 가스시설 시공업 제1·2종의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신규	19만5천900원
		보수	3만7천100원
	(6) 가스시설 시공업 제3종의 온수보일러시공자 및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	신규	19만2천700원
		보수	2만8천600원
나. 특별교육	(1) 보수·유지관리원		4만9천800원
	(2) 사용시설점검원		2만4천400원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운전자		2만2천200원
	(4) 도시가스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원		2만4천400원
	(5) 도시가스사용자동차 정비원		2만4천400원
다. 양성교육	교육대상자별 교육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 정한다.		
비 고			
1. 가목의 교육대상 중 “신규”는 신규종사 후 6개월 이내에 받는 교육과정이며, “보수”는 신규과정 교육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받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